

선내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주 기	대 상 자
선내숙지훈련			수 시	모든 선원
해 상 인 명 안 전 훈 련	소 화 훈 련		매월(여객선은 10일, 국제 항해여객선은 7일)	모든 선원
	단 정 훈 련	퇴 선 훈 련	매월(여객선은 10일, 국제 항해여객선은 7일)	모든 선원
		구명정 강화	3개월	모든 선원
		진 수 훈 련	1년	모든 선원
해 난 사 고 대 응 훈 련	선체손상 대처훈련 (충돌 및 좌초, 추진기 관 고장, 악천후대비 등)		3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모든 선원
	인명사고시 행 동 요 령	해 상 추 락	6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모든 선원
		밀폐공간 진 입 및 구조 훈련	2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밀폐구역의 진입 또는 구조 임무를 담당한 선원
	비상조타훈련		3개월	모든 선원
기름유출 대처훈련			매월 (국제안전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모든 선원
선박보안 숙지교육			선상직무 수행전 및 필요시	국제항해에 중 사하는 선박의 모든 선원
밀폐구역 진입 선내교육			2개월	국제항해에 중 사하는 선박의 모든 선원